■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최초 설립신고 시에는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란에 표시합니다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 조합원

연번	발기인/ 설립동의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해관계자
1	발기인	이유대	123456-1789012	02-383-8380	
2	발기인	서협동	450815-1234567	010-1544-5077	
3	발기인	김필요	500625-2345678	02-1544-5077	
4	발기인	나정직	480815-2345678	010-383-8388	
5	발기인	민자주	155444-1500777	02-383-8388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 적습니다

발기인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기인이 아닌 사람은 '설립동의자'로 기재합니다. 발기인도 일종의 설립동의자이지만 정관에 기명날인하는 자를 알기 위해 '발기인'으로 구분해 적는 것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작성방법

1. 이해관계자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연합회 설립 시 회원인 협동조합의 정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SEOUL COOP SUPPORT CENTER